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4. 9.
환경노동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8월 5일, 박홍배의원 등 1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4년 8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제418회국회(정기회)

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4.9.11.) 상정 · 축조심사

제418회국회(정기회)

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4.9.12.) 상정 · 축조심사 · 의
결(대안반영폐기)

제418회국회(정기회)

제2차 환경노동위원회(2024.9.12.) 상정·소위심사보고·찬반토론·
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박홍배의원)

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

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,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,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·지연이자 부과 등 여러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한편, 고의·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‘상습체불사업주’의 개념을 도입하고, 이에 대한 정부지원 등 제한,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, 신용제재 확대·강화 및 출국금지,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손을춘)

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된 안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김주영)

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, 보조·지원사업 참여 배제 등을 위한 채불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재조치를 확대하고,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채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채불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채불경위, 채불기간, 횟수, 채불규모 등을 감안하여 채불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,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채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.

6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